

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5. 6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」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(재정지원)제1항제2호를
“공모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”으로 함.

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제2호를

“공모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기금지원) 종합 장사시설 설치 조성 과 관련하여 원활하 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	제7조(재정지원) ① 시 장은 원활한 종합장 사시설 설치와 관련 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장사시설 설치지 역의 주민공동사업 및 숙원사업 2. <u>그 밖에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주민숙원사 업</u>	제7조(재정지원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개정안과 같음) 2. <u>공모한 내용을 기 준으로 하고 그 밖 에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 역의 주민숙원사업</u>
<신 설>	② 제1항의 장사시설 설치지역이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5호에 따른 시 설이 위치한 행정 리 · 동을 말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
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구미시 종합장사시설(이하“종합장사시설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관내에 설치한다.

제3조(화장장 등의 설치)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을 갖추고 봉안시설, 자연 장지, 추모공원 등 장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위원회 구성 운영) ①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입지선정) 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를 공모할 수 있다.

제6조(경비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제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원활한 종합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공동사업 및 숙원사업

2. 공모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

② 제1항의 장사시설 설치지역이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이 위치한 행정 리·동을 말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